

의안번호	2201960
의 퇴 인	권칠승의원
회 답 일	2023.10.28.
추 계 번호	24D2214

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리걸테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,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억 5,378만원으로 추계됨

[표 1]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리걸테크 산업 육성 기본계획	47.98	—	—	—	—	47.98	9.60
리걸테크 산업 실태조사	33.88	—	35.25	—	36.67	105.80	21.16
합 계	81.86	—	35.25	—	36.67	153.78	30.76

주: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 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	- 법무부장관은 리걸테크 산업의 육성·진흥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, 인력양성,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리걸테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-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리걸테크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 -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리걸테크산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6조 (리걸테크산업 육성기반의 조성)	정부는 리걸테크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리걸테크 관련 시설,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, 리걸테크 관련 공공데이터의 확보 및 공개·가공·유통, 리걸테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·연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정부는 법령·판례 등 리걸테크 관련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운영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3	안 제7조 (기술개발 등)	-정부는 리걸테크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, 관련 기술의 실용신안권·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함	의무규정
4	안 제8조 (자금의 지원)	-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리걸테크산업 육성기반의 조성, 리걸테크서비스 관련 기술개발, 리걸테크사업 창업자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9조 (업무의 위탁)	-법무부장관은 리걸테크산업 육성기반 조성, 리걸테크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개발 업무,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로서 창업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·단체 또는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에 위탁할 수 있음.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 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	○	-
2	안 제6조 (리걸테크산업 육성기반의 조성)	×	리걸테크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, 리걸테크 관련 공공데이터의 확보 및 공개·가공·유통,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·연수, 국제협력, 리걸테크 관련 정보와 통계의 수집·분석 및 유통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추진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재정소요 규모 추정 곤란
3	안 제7조 (기술개발 등)	×	리걸테크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재정소요 규모 추정 곤란
4	안 제8조 (자금의 지원)	×	리걸테크산업 육성기반 조성, 기술개발, 리걸테크서비스사업 창업자 지원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자금 지원 규모 등 추정 곤란
5	안 제9조 (업무의 위탁)	×	리걸테크산업 육성기반 조성, 기술개발, 리걸테크서비스사업 창업자 지원 업무를 법인·단체 또는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라 대학 등에 위탁하는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추정 곤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제5조에 따른 리걸테크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
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사 예산 사례를 준용함
 -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은 “5년마다”, 실태조사는 “2년마다” 실시하는 것으
로 함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¹⁾를 적용함
- 개정안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
는 점과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
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리걸테크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(안 제5조)

- 리걸테크 산업의 육성·진흥을 위한 리걸테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
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계의 전제에 따라 유사 기본계획의 수립에 소
요된 예산을 준용
 - 개정안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,
기본계획 수립 관련 정책연구용역은 2026년에 한번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
 - 2020년 이후 법무부가 수행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정책연구용역 소요예산
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평균 소
요예산은 2026년 4,798만원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

(2024년 10월 기준, 단위: %)
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2.5	2.1	2.0	2.0	2.0	2.0	2.0

[표 2] 법무부 기본계획 수립 관련 용역실시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정책연구용역제목	실시년도	소요예산
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	2021	69.5
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(NAP) 이행평가 및 제4차 NAP 과제 제시	2022	47.5
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	2023	15.0
제2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	2023	35.0
평균	-	41.75

자료: 법무부

□ 실태조사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0년 이후 법무부가 실시한 실태조사가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에 소요된 예산을 준용

-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, 추계기간에 2026년, 2028년, 2030년 3번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3] 법무부 실태조사 관련 용역실시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정책연구용역제목	실시년도	소요예산
과학·기술 우수인재 영주·귀화 제도 전면 개편을 위한 우수인재 실태조사 및 주요국 사례 연구	2023	63.65
지역기반 비자 사업 평가지표 개발	2023	20.91
주거약자를 위한 임대차보증금 보호방안 연구	2022	19.90
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제도 실태조사 및 분석	2021	20.00
평균	-	31.11

자료: 정책연구관리시스템

- 2020년 이후 법무부가 수행한 실태조사가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소요예산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추가재정소요는 아래 표와 같음

[표 4] 리걸테크 산업 실태조사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리걸테크 산업 실태조사	33.88	-	35.25	-	36.67	105.8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추계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리걸테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,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억 5,378만원으로 추계됨

[표 5]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리걸테크 산업육성 기본계획	47.98	—	—	—	—	47.98	9.60
리걸테크 산업 실태조사	33.88	—	35.25	—	36.67	105.80	21.16
합 계	81.86	—	35.25	—	36.67	153.78	30.76

주: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nabo.go.kr